

## 【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】

현 행	개 정(안)
<p><b>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①</b>  <u>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,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·통지 등이 없어도,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(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), 곧 이를 변제(또는 이행)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.</u></p> <p>1. <u>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·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. 다만,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.</u></p> <p>2. <u>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(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)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</u></p>	<p><b>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①</b>  <u>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(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. 이하 같음). 이 경우,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,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.</u></p> <p>1. <u>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도달하거나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/u></p> <p>2. -----          ----- <u>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-----</u>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<u>도달하거나 -----</u>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/p>